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규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

또한, 최근에는 정자교 인도부 붕괴사고 등 시설물과 관련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상향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기초점검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상향

하여, 보다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규정 등(안 별표11 수정)

- 1)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업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안 별표5 수정)

- 1) 기존에 초급기술자였던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중급 기술자로 상향하여 경험을 갖춘 기술인이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함.

다. 정밀안전점검의 의뢰 제한 규정(안 제8조제4항 수정)

- 1) 현행 법령상 안전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는 정밀안전 점검을 의뢰할 수 없도록 함.
- 2) 금번에 신설된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에는 정밀 안전점검의 의뢰를 제한하고자 함.

라. 기타 경미한 용어 수정(안 제14조제1항제4호 등 수정)

- 1) 법 개정예 따라 “유지관리업자” 용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각각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2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 안전검 점	가. 토목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 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 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 육을 이수하였을 것
-------------------	-------------	--	---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나. 건축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별표 9 비고 제1호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2호 위반행위란 가목 중 “법 제28조제6항”을 “법 제28조제6항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란 바목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 2제1항”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 위반행위란 버목 중 “경우”를 “경우(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란 서목 중 “경우”를 “경우(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란 처목 중 “경우”를 “경우(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나.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이상 (토목 분야)	1명 이상 (건축 분야)
	다.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3.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비고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 ③ (생략)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안전진단전문기관</u> 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u>안전진단전문기관</u>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u>안전진단전문기관</u> .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u>안전진단전문기관</u> 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u> -. 1. ----- ----- ----- ----- ----- ----- <u>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u> 2. ----- ----- <u>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u> . ----- ----- <u>안전진단전문기관</u> <u>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u> ----- -----.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생략)

②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및 이들을 지도·

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안전점검전문기관이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안전점검전문기관 -----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생략)	----- ----- -----.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28조의2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3587